일반직원재심위원회규정

1991. 9. 27 제정 1991. 12. 28 개정 1993. 1. 1 개정

- 제 1조(목적) 학교법인 덕성학원 산하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재심위원회(이하 "재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 2조(구성)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.
 - ③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본 법인 이사가 재심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이사의 임기로 한다.
- 제3조(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)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3조의 2(재심청구) ① 정관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에는 다음의 사항과 서류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.
 - 1. 재심청구자의 소속학교명, 직, 성명, 주소, 생년월일
 - 2.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
 - 3. 재심청구의 사유
 - 4. 재심에 필요한 증거
 - ② 정관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제 4조(재심위원회의 심사) ① 재심위원회는 정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.
 -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재심위원회의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 5조(심사의 범위)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

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.

- 제 6조(재심청구인의 진술권)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 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.
- 제 7조(재심청구의 취하)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.
- 제 8조(재심위원회 결정)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한 의견으로 본다.
 -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,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.
 - 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
 - 2.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
 -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, 증거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가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제 9조(재심심사결정서 작성)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 - 1.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
 - 2. 결정 주문
 - 3. 결정 이유와 개요
 - 4. 증거의 판단
- 제10조(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)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 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,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.
- 제11조(재심결정의 효력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.
- 제12조(위원 수당 등)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

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3조(재심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.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제14조(운영세칙)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